

서 약 서 (법인 임원용)

저는 고물영업법 제4조에 명시된

- 1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제31조에 규정하는 죄 (무허가 고물영업 등) 혹은 형법 (메이지40년법률제45호) 제235조(절도), 제247조(배임), 제254조(유실물 등 횡령) 혹은 제256조제2항에 규정하는 죄 (장물 등의 운반, 보관 혹은 유상 양수(有償讓受), 또는 유상 처분의 알선)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집단적 또는 상습적인 폭력적 불법행위 또는 기타의 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4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3년법률제77호) 제12조 혹은 제1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동법 제1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자로 당해 명령 또는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물영업허가를 취소 당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허가를 취소 당한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취소에 관한 청문기일과 장소가 공시된 날의 60일전 이내에 당해법인의 역원이었던 자로 당해 취소 당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에 관한 청문기일과 장소가 공시된 날로부터 당해 취소를 행하는 날 또는 당해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날까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반납한 자 (그 고물영업 폐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제외.)로서 당해 반납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심신 장애로 고물상 또는 고물시장주의 업무를 적정히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합니다.

오사카부공안위원회귀중

년 월 일
주 소
성 명